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16

발의연월일: 2025. 3. 19.

발 의 자:최수진・임이자・김소희

김예지・구자근・김선교

박준태 • 박충권 • 강승규

신성범 · 김위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회법」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국회 다수 야당이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할 경우 정치적 악용, 행정 공백, 사법부 부담, 국정 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탄핵심판의 경우 길게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 운영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와 같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단 현행 헌법 제65조제3항에서 "탄핵소추의결 시 직무가 정지된다" 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, 「국회법」과 「헌법재판소법」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심사한 후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함(안 제134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11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4조제2항 중 "권한 행사는 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"를 "권한 행사의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, 임명 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	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		
과) ① (생 략)	과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	2		
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	권한 행		
사는 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	사의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별		
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	도 결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		
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	시행되며, 임명권자는 소추된		
<u>없다</u> .	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		
	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.		
<u><신 설></u>	③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접		
	수 후 30일 이내에 직무 정지		
	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		